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39
----------	-----

2023. 11. 27.(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4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5일

라. 상정일자 : 2023년 11월 20일

- 제413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한충완 바이오식품의약국장)

가. 제안이유

-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사업(안 제5조)
-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및 경비의 지원(안 제6조)
-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안 제7조 및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김홍식 수석전문위원)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 구축되는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¹⁾인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3호파목에 근거하여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은 지방자치의 사무 범위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생명공학육성법」제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시책과 지

1)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9.18.

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흥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률의 범위 안에서 충청북도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 구축되는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인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음.

○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케이-바이오 스퀘어”에 대하여 정의함.
- 안 제3조는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는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5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6조는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는 케이-바이오 스퀘어와 관련된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제정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제

13조제2항제3호파목에 따른 지방자치사무의 범위에서「국가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3조를 바탕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생명공학육성법」제3조제2항에 근거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흥시책을 세우고 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

라. 검토의견

-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인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본 조례안의 본질적 취지는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인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단지의 구조적 외양이 갖춰진 이후에는 내실화를 위한 사업이 전략적으로 추진될 것이 자명하다 하겠음.

“케이-바이오 스퀘어”는 총 소요예산 2.4조원²⁾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데, 조례안 중 세부사업 추진의 주된 근거가 되는 안 제5조제2호는 “국내외 의료기관, 연구소, 기업, 학교 등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원

2) 2.4조원(국비 1조9,700억원, 도·시·비 3,300억원, 민자 1,000억원), 바이오식품의약품 자체간담회 실국 자료, 2023.11.

사업”으로만 제시되고,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방향·지원분야·지원방식 등이 드러나지 않아 사업 추진에 혼선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산업단지 조성 지원 법령 內 유사 조항 예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中

제11조(재단의 설립 및 지원) (중략)

- ⑤ 제1항에 따른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연구성과 제고 및 지원
 2.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제품개발 및 사업화 지원
 3. 의료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유치·양성·활용에 대한 지원
 4.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와의 협력
 5. 의료연구개발기관 등과 공동연구를 통한 기반기술의 확보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거나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439
----------	-----

제출연월일 : 2023년 10월 2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사업(안 제5조)
- 전담기구의 설치·운영 및 경비의 지원(안 제6조)
-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식재산권의 보호(안 제7조 및 제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충청북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혁신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성공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케이-바이오 스퀘어”(K-BIO SQUARE)란 첨단 바이오 핵심기술개발을 선도하기 위한 것으로, 충청북도 오송생명과학단지 일원에 조성되는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기업·병원·상업·금융·주거 시설 등을 혼합 배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체계적·효율적인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5년마다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첨단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분석
2. 국내외 첨단 바이오산업 동향과 발전 전망
3.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의 기본방향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첨단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기술개발 및 연구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5. 첨단 바이오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첨단 바이오산업의 동향 및 기술 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매년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메디컬 캠퍼스 조성사업
2. 국내외 의료기관, 연구소, 기업, 학교 등 유치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3. 그 밖에 도지사가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과 관련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따로 정하는 사업

제6조(전담기구) ①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의 조기 조성을 위해 국내외 기관,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도지사는 케이-바이오 스퀘어와 관련된 상표 등 지식재산권의 취득,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취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전략 기술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 생명공학육성법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제11조제4항 관련)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 제4항 제1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 사 유

- 안 제5조(케이-바이오 스퀘어 조성 지원사업), 안 제6조(전담기구의 설치·운영 및 경비의 지원), 안 제8조(지식재산권 보호) 등 의안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구성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작성자

- 바이오식품의약국 바이오정책과장 변 인 순